

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6.

경 상 북 도 지 사

### 1. 처분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동성 엔지니어링 (이상규)	토목공사업 (16-1131)	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41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제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	과태료 (금12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0조 제1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